

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72호(2014.10.30.)로 결정(변경)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대지내 공지의 조성방법을 변경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. 8. 27.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개발지특별계획구역 하제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대지 내 공지 조성방법(침상형공지)을 쌈지형공지로 지상에 조성하여 다수의 보행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.

2.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사항

가.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

- 대지 내 공지 및 통로

구분	적용대상	계획내용		비고
		기정	변경	
쌈지형공지	• 보행통로 및 가각부	8개소	9개소	
침상형공지	• 지하철 출입구 부분	1개소	0개소	

3. 관계도면 : 지형도면 (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경미한 변경)도)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4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(☎820-9195)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